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

	사업장명				시업자등록번	호(고유번호)			
사업장	사업장관리번호				전화	번호			
대표자	팩스		E-mail		nail				
	성명				생년월일				
	휴대전화번호		E-mail						
	팩스, E-mail은 있는 경우만 기재								
대표자 보수 미지급 기간									
시즈	-일] 년		~	종	료일	년	월	일
			※ 보수	미지급 기간의	종료일 미경	정 시 종료일	을 9999.1	2.31.로	기재

본 법인(또는 단체) 사업장의 대표자는 상기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임을 확인합니다.

20 . . .

신청자(대표자/법인명): (인)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

※ 유의사항 ※

- 1. 직장가입자인 대표자가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,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2. 1인 법인사업장의 대표자가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, 사업장 탈퇴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3. 추후 국세청 자료연계 또는 지도검검 등을 통하여 보수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, 사업장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사유발생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소급하여 취득되며 그로 인한 보험료 정산으로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4. 6개월 이상 소급하여 신고할 경우 해당 확인서가 아닌 대표자의 무보수 미 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, 규정, 이사회의사록, 조례 중 하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5. 신청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법인인감(또는 사용인감)을 사용하여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